

청약안내문[특별공급(공통사항)] (1)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년 03월 20일]

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일정

신청일자	신청방법	당첨자 발표
2026.03.31(화)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6.04.09(목)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로그인 후 개별 조회

※ 청약 신청 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발급(가입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 또는 네이버 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발급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아크로 드 서초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가능(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 자격	주택소유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기본 자격	- 해당 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 (태아 및 입양 포함)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 1순위 해당하는 자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배정 규모	전용85㎡이하의 10% 범위 내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	전용85㎡이하의 23% 범위 내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내	전용85㎡이하의 9% 범위 내
	소득/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주	
청약 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 필요)				
	요건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기관추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예치금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안내문[특별공급(공통사항)] (2)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년 03월 20일]

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구분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배제		혼인특례	출산특례
주택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당첨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이력 배제 ※ 혼인 전 주택 처분 완료 시	본인의 혼인 전 청약당첨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 배제
적용유형	신혼부부, 생애최초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횟수제한	제한없음		본인 기준 1회	세대 기준 1회
비고	※ 특별공급 특례 청약신청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구분		내용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 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청약안내문[특별공급(공통사항)] (3)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년 03월 20일]

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공급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border="1"><thead><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thead><tbody><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tbody></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서울특별시</th><th>인천광역시</th><th>경기도</th></tr></thead><tbody><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body></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기타 사항은(유의사항 및 필요서류 등)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 과정에서 오류/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년 03월 20일]

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일정

신청일자	신청방법	당첨자 발표
2026.03.31(화)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6.04.09(목)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로그인 후 개별 조회

※ 청약 신청 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발급(가입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 또는 네이버 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발급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아크로 드 서초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가능(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부 서울남부지방보훈청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애인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부 서울남부지방보훈청 복지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자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 업무수행 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문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년 03월 20일]

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일정

신청일자	신청방법	당첨자 발표
2026.03.31(화)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6.04.09(목)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로그인 후 개별 조회

※ 청약 신청 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발급(가입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 또는 네이버 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발급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아크로 드 서초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가능(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①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우선공급 낙첨자와 기타지역 거주자가 재경쟁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 하지 않음②배점		
	배점항목	총 배점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3명 35 2명 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2명 10 1명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문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년 03월 20일]

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일정

신청일자	신청방법	당첨자 발표
2026.03.31(화)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6.04.09(목)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로그인 후 개별 조회

※ 청약 신청 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발급(가입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 또는 네이버 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발급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아크로 드 서초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가능(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 이상)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세대주일 것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가점 선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thead><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head><tbody><tr><td rowspan="8">① 무주택기간</td><td rowspan="8">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tr><td rowspan="4">② 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r><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tr><td>3명</td><td>20</td><td></td><td></td></tr><tr><td rowspan="8">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8">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r><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tbody></table> <p>※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선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③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선정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을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경우, 배우자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함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1)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년 03월 20일]

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일정

신청일자	신청방법	당첨자 발표
2026.03.31(화)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6.04.09(목)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로그인 후 개별 조회

※ 청약 신청 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발급(가입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 또는 네이버 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발급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아크로 드 서초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가능(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격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①소득구분																		
	<table><thead><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2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10%)</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2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5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body></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table><thead><tr><th>순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tbody></table>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④자녀기준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⑤(입산·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2)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년 03월 20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격

구분	내용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3.20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의원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또는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순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주택</td> <td>공공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공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공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공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공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공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 (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3)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년 03월 20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 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및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② 해당 직장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②,③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대표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소득금액증명원 ③ 전년도 재무제표(직인날인) ④ 재직증명서	① 등기소 ② 세무서 ③,④ 해당 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③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주택전시관에 비치) ② 소득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주택전시관 비치 ② 세무서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소득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객관적인 소득산정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적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청약신청자는 소득관련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제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4)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년 03월 20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 자료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서울시 외 위택스 (www.wetax.go.kr) ④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명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위택스 (www.wetax.go.kr)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소득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객관적인 소득산정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적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청약신청자는 소득관련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제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문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내문(1)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년 03월 20일]

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일정

신청일자	신청방법	당첨자 발표
2026.03.31(화)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6.04.09(목)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로그인 후 개별 조회

※ 청약 신청 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발급(가입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 또는 네이버 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발급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아크로 드 서초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가능(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연회차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정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①소득구분 <table><thead><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 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body></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③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 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 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내문(2)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년 03월 20일]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33%;">입주자모집공고일</td> <td style="width:33%;">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d> <td style="width:33%;">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2026.03.20</td> <td style="text-align:center;">(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td> <td style="text-align:center;">(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td> </tr> </table> •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rowspan="2">소득구분</th> <th rowspan="2">비율</th> <th colspan="6">소득금액</th> </tr> <tr> <th>3인 이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r> <td>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td> <td>130% 이하</td> <td>~9,793,892원</td> <td>~11,442,863원</td> <td>~12,125,081원</td> <td>~12,878,142원</td> <td>~13,631,203원</td> <td>~14,384,265원</td> </tr> <tr> <td>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td> <td>130% 초과 160% 이하</td> <td>9,793,893원~ 12,054,021원</td> <td>11,442,864원~ 14,083,523원</td> <td>12,125,082원~ 14,923,176원</td> <td>12,878,143원~ 15,850,021원</td> <td>13,631,204원~ 16,776,866원</td> <td>14,384,266원~ 17,703,710원</td> </tr> <tr>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td> <td>12,054,022원~</td> <td>14,083,524원~</td> <td>14,923,177원~</td> <td>15,850,022원~</td> <td>16,776,867원~</td> <td>17,703,711원~</td> </tr> <tr> <td>1인 가구</td> <td>160% 이하</td> <td>~12,054,021원</td> <td>~14,083,523원</td> <td>~14,923,176원</td> <td>~15,850,021원</td> <td>~16,776,866원</td> <td>~17,703,710원</td> </tr> <tr> <td></td> <td></td> <td>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td> <td>12,054,022원~</td> <td>14,083,524원~</td> <td>14,923,177원~</td> <td>15,850,022원~</td> <td>16,776,867원~</td> <td>17,703,711원~</td> </tr> </table>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3.20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3.20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또는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순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주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 (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내문(3)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년 03월 20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 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및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②, ③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대표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소득금액증명원 ③ 전년도 제무제표(직인날인) ④ 재직증명서	① 등기소 ② 세무서 ③, ④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③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주택전시관에 비치) ② 소득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주택전시관 비치 ② 세무서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소득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객관적인 소득산정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적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자는 소득관련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제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내문(4)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년 03월 20일]

자산입증 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가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서울시 외 위택스 (www.wetax.go.kr) ④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위택스 (www.wetax.go.kr)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②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④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등)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0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음을 확인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해당직장 / 세무서 ③ 세무서 ④ 해당직장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소득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객관적인 소득산정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적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청약신청자는 소득관련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제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청약안내문[일반공급] (1)

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청약 일정

		신청일자	신청방법	당첨자 발표
1순위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6.04.01(수)	• 인터넷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2026.04.09(목)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로그인 후 개별 조회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2026.04.02(목)		
2순위		2026.04.03(금)		

※ 청약 신청 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발급(가입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 또는 네이버 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발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 가능 - 세대주일 것(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h>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②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40%</td> <td>60%</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청약안내문[일반공급] (2)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명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청약안내문[일반공급(가점제)] (3)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 (1)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p>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을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경우, 배우자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함</p>

청약안내문[일반공급(가점제)] (4)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만 30세부터 산정,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구분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기산시점	무주택기간	기산시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만 30세가 된 날		혼인신고일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만 30세가 된 날 또는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혼인신고일 또는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부적격 사례 주의사항

부적격 사유	사례	해석내용
부적격사유	만 35세의 미혼인 청약자가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서 무주택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선택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 5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그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세대분리 된 배우자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 아님] 무주택세대원 구성 요건으로 청약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을 한 경우	[무주택자 아님]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만 60세 이상인 청약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청약자(무주택)와 배우자(무주택)가 세대분리되었고, 배우자가 60세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동거 중인 경우	[무주택자 아님] 분리된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단, 형제 또는 자매는 해당 없음)
	청약자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 이력은 없으나 2022년에 공급된 아파트 청약당첨되어 분양권이 있는 경우	[무주택자 아님]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된 분양권의 청약 당첨되어 계약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상기 사례는 예시로, 해당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안내문[일반공급(가점제)] (5)

부양가족 산정 기준

부양가족 [2명]	부양가족 [2명]	부양가족 [3명]	부양가족 [3명]
<p>※주민등록 1년 미만 등재</p>		<p>※주민등록 1년 이상 등재</p>	<p>분리 세대</p>
부양가족 [5명]	부양가족 [5명]	부양가족 [5명]	부양가족 [7명]
<p>※주민등록 3년 이상 등재</p>	<p>※주민등록 1년 이상 등재</p> <p>※주민등록 3년 이상 등재</p> <p>분리 세대</p>	<p>※주민등록 3년 이상 등재</p> <p>※주민등록 3년 이상 등재</p> <p>분리 세대</p>	<p>※주민등록 3년 이상 등재</p> <p>※주민등록 3년 이상 등재</p> <p>분리 세대</p>

부양가족 기준 부적격 사례 주의사항

부적격 사유	사례	해석내용
부적격사유	청약자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세대의 부양가족을 본인 포함 4인으로 신청한 경우	[부양가족 3명] 청약접수 시 청약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청약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며, 형제 또는 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약자 본인, 배우자, 부친(만 60세 이상, 주택소유) 세대의 부양가족을 2명으로 신청한 경우	[부양가족 1명] 부친이 만 60세 이상으로 무주택 인정 받더라도,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청약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세대의 부양가족을 3명으로 신청한 경우	[부양가족 1명] 직계비속(자녀)은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 가능합니다.
	청약자 본인, 배우자, 아들(만 30세 이상 미혼, 8개월 전 전입) 세대의 부양가족을 2명으로 신청한 경우	[부양가족 1명] 만 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자녀)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상기 사례는 예시로, 해당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